#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015.3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위성호 (1885)

## 〈목 차〉

1. 지배구조 일반	 3р
2. 이사회	 <b>7</b> p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7p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52p
5.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61p
6. 감사위원회	 66p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75p
8. 리스크관리위원회	 88p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95p
10. 주주총회	 110p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11p

#### 1. 지배구조 일반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회사')는 건전한 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다양성/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그 원칙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회사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당사 및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內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www.shinhancard.com)

두번째로,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외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서 이사회와 관련하여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지배구조내부규범/이사회규정 등을 정비하여 모범규준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그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14년말 기준 이사 총수 57% 사외이사로 구성).

또한, 모든 이사회內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운영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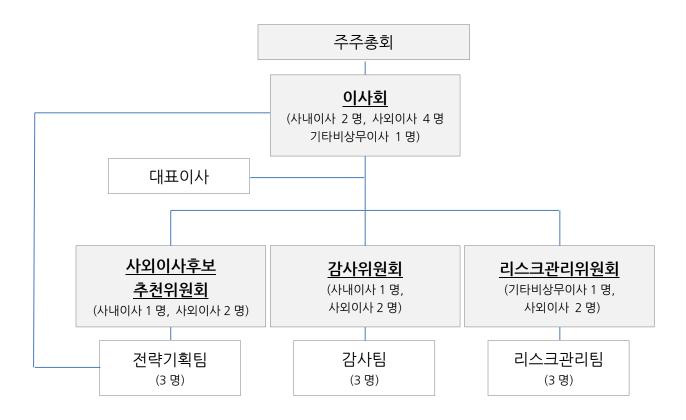
영진 견제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특정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4년말 기준 금융분야 3명, 법률분야 1명, 경영분야 2명, 경제분야 1명)

또한, 주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부자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중 1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본인추천을 금지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 (14년말 기준)



####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회사 창립의 근간인 재일동포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자가 당사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로 구성된 총 3개의 이사회 內위원회가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內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67%)

특히,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의로 설치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우도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맞도록 `07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3) 지배구조 현황(14년말 기준)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의장	관련 규정
이사회	· 경영전략/목표 수립 · 정관 등 중요규정 제/개정 · 예산 및 결산 승인 · 지배구조 정책,원칙 수립 ·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등	<u>7명</u> (사외이사 4명)	<b>위성호</b> (사내이사)	-정관, -이사회규정, -지배구조내부 규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선임 원칙 수립/점검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검증 등	<u>3명</u> (사외이사 2명)	<u>위성호</u> (사내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감사 위원회	· 감사계획의 수립/집행/사후조치 ·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의 선임/평가 등	<u>3명</u> (사외이사 2명)	<u>반장식</u>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 ·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개정 등	<u>3명</u> (사외이사 2명)	<u>김경림</u> (사외이사)	-리스크관리 위원회규정

## 다. 관련 규정

- ㅇ 첨부1. 정관
- ㅇ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 ㅇ 첨부3. 이사회 규정
- ㅇ 첨부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ㅇ 첨부5. 감사위원회 규정
- ㅇ 첨부6.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 2. 이사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목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구체 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무적인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최종 승인권한은 이사 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에, `15년 경영전략/목표는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14.11월에 개최된 이사회 워크샵을 통해 사전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이사회 워크샵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4.12월에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15년 경영전략/목표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15년은 창조적 상품/서비스와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신한카드의 '따뜻한 금융' 철학을 기반으로, 'First Mover'와 'Fast Follower'라는 2가지 큰 방향성과 제반 전략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BIG to GREAT', 즉 '차별화된 1위 카드사'의 위치를 조기에 달성하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따뜻한 금융' 실행력 강화, Big Data 경영체계 가속화, 차별화된 상품/마케팅 활성화, 미래성장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 채널 운영체계 혁신, 전략적 비용절감 성과 강화로 구성된 전

사 6大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나) 정관변경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14년8월 개최된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정관변경(안)을 승인하였으며, 당사 정관 사업목적 항목에 '자동차 대여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할부금융 License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오토금융의 Total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렌터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진행 된 사항입니다.

####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당사 이사회는,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여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경우, 예산은 경영전략/목표와 함께 의결합니다. 경영계획과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최종 승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15년 예산은 '14.12월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임직원 보수(인건비) 약5,069억원을 포함한 판관비 예산 26,768억원 및 투자/기부금 예산 7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판관비 예산은 시장지위 확대를 위한 영업 비용 증가와 전략적 비용절감 계획을 적극 반영하였고, 투자예산은 IT 보안투자강화, 핀테크 등 새로운 마케팅 환경 구축을 위해 전년대비 다소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년 결산안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14.1월 초안을 마련하여 `14.2월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감사위원회를 거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14.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당기순이익 : 6,581억원 (연결기준 6,581억원)

- 총자산 : 216,506억원 (연결기준 216,492억원)

- 배당 : 5,240억원 (배당後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28.6%, ROE 12.4%)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사항 뿐만 아니라, 부문의 신설/폐지 등 조직 기본체계의 결정/변경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4.12월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15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5년 조직개편은 영업추진력의 획기적인 강화, Code9 및 Big Data 경영체계를 가속화, 미래 지불결제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선제적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기존조직체계 대비 1개 본부, 2개 팀이 늘어난 '4부문/16본부/50팀'으로 재편하였으며, 제반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립/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한 사항으로 `15.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새롭게 제정하고, 정관, 이사회규정 등 관련 규정을 그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당사가 최적의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계획입니다.

####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 이사회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또는 이사의 경업승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특히 당사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계열사 등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가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을 지속 보완/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법령준수/건전경영/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수립/변경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의 실제 작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감사위원회가 최종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14.2월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13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평가결과를 감사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의 적정성,경영활동의 준법성,위험요인 통제의 적정성,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등 총 64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종평가는 적정(양호)한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14.5월 개최된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아)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매년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한도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14.12월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15년 리스크한도 설정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리스크한도를 27,900억원으로 설정하였고, 유형별 리스크한도는 총리스크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리스크 24,400억원, 금리리스크 2,700억원, 운영리스크 2,800억원, 시장리스크 4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였음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자) 경영승계업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승계계획 등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경영승계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계획의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당사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이사)

#### (1) 총괄

당사 이사회의 총원수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운영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정관§25).

14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6명의 임기가만료되었으며, 이 중 4명은 연임되었고 새롭게 2명(사외이사 1명, 상근감사위원 1명)의 이사가선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금융회사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도록 당사 정관을 2015년 정 기주주총회에서 정비할 계획 입니다.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 5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7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여전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제19조의8)에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해당 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해당 회사

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해당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3조에서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구성원

#### ① 이사회 의장 위성호(대표이사)

위성호 대표이사는 `1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일(2013.8.23)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3.8.27일부터 2015.8.26일까지 입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スO 거리
From	То	주요 경력
2013. 8월	현재	신한카드 사장
2013. 5월	2013. 8월	신한카드 부사장
2011. 4월	2013. 5월	신한은행 부행장
2008. 8월	2011. 4월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07. 8월	2008. 8월	신한금융지주 경영관리담당 상무
2007. 5월	2007. 8월	신한금융지주 경영관리팀장
2006. 4월	2007. 5월	신한금융지주 HR팀장
2004.12월	2006. 4월	신한금융지주 통합기획팀장
2004. 1월	2004.12월	신한은행 PB사업부장
2002. 8월	2004. 1월	신한은행 강남 PB센터장
1985.2월		신한은행 입행

위성호 대표이사는 상임이사로서 회사 총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內위원회 활동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나, 2015년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는 금융회사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사외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 ② 이사 반장식(사외이사)

반장식 이사는 2010년 정기주주총회일(2010.3.23)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現 임기는 2015년 정기주주총회일(2015.3.26일)에 만료 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スO 건컴
From	То	주요 경력
2008. 9월	현재	서강대학교 교수 (現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007. 4월	2008. 9월	기획예산처 차관
2006. 8월	2007. 4월	기획예산처 재정운영실장(예산실장)
2003. 4월	2006. 8월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1999. 5월	2000. 4월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장, 예산총괄과장
1998. 3월	1999. 5월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장
1996. 4월	1998. 3월	재정경제원 지역경제과장, 기술정보과장
1983. 5월	1996. 4월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 종합기획과, 예산총괄과
1978. 5월	1983. 5월	총무처, 서울시청
1977. 11월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2. 12월	1977. 2월	한국외환은행

반장식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14.3월부터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최초 선임 이후부터 5년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③ 이사 김경림(사외이사)

김경림 이사는 2011년 정기주주총회일(2011.3.22)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現 임기는 2015년 정기주주총회일(2015.3.26일)에 만료 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70 77
From	То	주요 경력
2014. 1월	현재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 고문
2008. 9월	2013. 12월	법무법인 지평 지성 고문
2007. 5월	2010. 5월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
2004. 5월	2010. 5월	삼성증권 사외이사
2004. 4월	2008. 9월	법무법인 지성 상임고문
2002. 4월	2003. 4월	한국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2000. 5월	2002. 3월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1999. 3월	2000. 5월	부산은행 은행장
1997. 3월	1998. 12월	은행감독원 부원장보
1995. 7월	1997. 3월	한국은행 이사
1994. 4월	1995. 7월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장
1991. 4월	1994. 4월	은행감독원 여신관리국장
1990. 3월	1991. 4월	은행감독원 금융개선국장
1988. 9월	1989. 3월	은행감독원 임원실장
1983.12월	1986. 7월	한국은행 자금부 차장
1979. 5월	1980. 4월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과장
1976. 8월	1979. 5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조사역
1966. 2월		한국은행 입행

김경림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12.3월부터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2014.3월부터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④ 이사 소재광(기타비상무이사)

소재광 이사는 2012년 정기주주총회일(2012.3.28)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現 임기는 2015년 정기주주총회일(2015.3.26일)에 만료 됩니다. 소재광 이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임원(부사장) 자격으로 최초 2년간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나, 2014.3월부터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범규준 시행에 앞서 당사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루

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소재광 이사의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70 77
From	То	주요 경력
2012. 8월	현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1. 4월	2012. 8월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보(상무)
2009. 8월	2011. 4월	신한카드 신용채권,리스크관리 부사장
2007. 10월	2009. 8월	신한카드 경영관리담당 상무
2004. 3월	2007. 10월	LG카드 경영지원담당 이사대우
2003. 4월	2004. 3월	LG카드 전략기획팀 부장
2002. 8월	2003. 4월	LG카드 IR팀 부장
2001. 6월	2002. 8월	LG카드 금융팀 부장
2000. 3월	2001. 1월	LG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업조정팀 부장
1992. 3월	2000. 3월	LG그룹 회장실 국제부 과장
1986. 7월	1992. 3월	금성사

소재광 이사는 2012.3월부터 2년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2.3월부터 현재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⑤ 이사 김동환(사외이사)

김동환 이사는 2013년 정기주주총회일(2013.3.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現 임기는 2015년 정기주주총회일(2015.3.26일)에 만료 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スO 거러	
From	То	주요 경력	
1997. 4월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 11월	현재	은행법학회 부회장	
2011. 7월	2012. 6월	금융학회 부회장	
2010. 5월	2011. 4월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실장	

2009. 2월	2011. 2월	금융감독원 재제심의위원회 위원
2008. 10월	2009. 10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위원
2007. 3월	2009. 3월	감사원 금융/재정분과 자문위원
2007. 3월	2010. 3월	전북은행 사외이사
2005. 7월	2007.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분과위 자문위원
2002. 4월	2004. 3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1998. 4월	2006. 3월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 전문위원
1990. 4월	1997. 3월	일본 문부성 국비연구원
1986. 7월	1990. 3월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김동환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13.3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⑥ 이사 박평조(사외이사)

박평조 이사는 2014년 정기주주총회일(2014.3.31)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5년 정기주주총회일(2015.3.26일)에 만료 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スO 거리
From	То	주요 경력
2009. 7월	현재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고문
2006. 3월	현재	일본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1997. 6월	현재	재일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직선 중앙위원
1988. 5월	현재	사회복지법인 미마츠선린회 이사장
2003. 3월	2004. 3월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2002. 4월	2004. 3월	삿포로 쓰쓰기노 비루진구협회 부회장
1999. 4월	2005. 4월	재일 대한민국민단 북해도지방본부 단장
1997. 8월	1999. 3월	신용조합 북해상은 이사장
1996. 4월	1999. 3월	재일 대한민국민단 북해도 지방본부 의장
1993. 4월	1996. 3월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정책기획담당)
1992. 3월	2005. 3월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1990. 12월	1994. 5월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1988. 5월	2006. 3월	주식회사 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1986. 4월	1992. 3월	북해도 한국 청년상공회 회장

박평조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14.3월부터 현재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⑦ 이사 김성화(상근감사위원)

김성화 이사는 2014년 정기주주총회일(2014.3.31)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입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30 건건
From	То	주요 경력
2012. 3월	2014. 3월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2007. 8월	2008. 6월	신용감독국장
2006. 4월	2007. 8월	은행감독국장
2005. 7월	2006. 4월	기획조정국 국장조사역
2004. 6월	2005. 6월	런던정경대 재무회계학 객원연구원
2003. 4월	2004. 4월	국제업무국 국장
2002. 1월	2003. 4월	감독정보실 실장
2001. 5월	2002. 1월	은행검사2국 팀장
1999. 1월	2001. 5월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수석전문역
1998. 4월	1998. 12월	은행감독원 기획조정실 과장
1996. 9월	1998. 4월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과 과장
1978. 1월	1996. 9월	한국은행

김성화 이사는 당사의 감사 전반을 담당하는 상근감사위원으로서 2014.3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3) 요약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 선임	임기 만료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위성호	대표 이사	이사회 의장	·신한은행 입행 ·신한은행 PB사업부 부장 ·신한지주 부사장 ·신한은행 WM그룹 부행장 ·신한카드 리스크관리부문장 ·신한카드 대표이사	`13.8.27	`15.8.26	18개월	사추위
반장식	사외 이사	감사 위원장	·외환은행 입행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차관 ·서강대학교 교수	`10.3.23	`15.3.26	59개월	감사위 사추위
김경림	사외 이사	리스크 관리 위원장	·한국은행 입행 ·한국은행 이사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고문	`11.3.22	`15.3.26	47개월	리스크위 사추위
소재광	비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	·금성사 입사 ·LG카드 경영지원담당 ·신한카드 경영관리담당 상무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12.3.28	`15.3.26	35개월	리스크위
김동환	사외 이사	사외 이사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3.27	`15.3.26	23개월	감사위
박평조	사외 이사	사외 이사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14.3.31	`15.3.26	11개월	리스크위
김성화	상임 이사	상근 감사 위원	·한국은행 입행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과 과장 ·은행감독국장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신한카드 상근감사위원	`14.3.31	`16년 정기주총	11개월	감사위

#### 다. 활동내역

#### (1) 활동내역 개요

`14년에는 총 10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93%(정기이사회의 경우 96%, 임시이사회 90%)입니다.

`14.1월에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이사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주요 경과사항 및 당사 영향 및 대응계획 등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에도 위와 같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내용을 이사진과 공유할 계획 입니다.

14.11월에 소집된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신한은행 등 그룹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카자흐스탄 지역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자회사 설립 이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사회에 보고 할 계획입니다.

또한, `14.11월에 개최된 제4차 정기이사회 직후에는 이사회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 워크샵에서는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작성한 `15년도 경제환경 전망 및 당사 경영진이 초안으로 수립한 `15년도 경영전략/목표 등을 공유하고 이사진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14.12월에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15년 경영전략/목표를 최종 승인 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2014.2.10일(17:00~18:20) / 안건 통지일 : 2014.1.29

항목			이시	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남인	조영래	반장식	김경림	소재광	김동환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	기의견 없	 , ,			

4	. 의결안건							
	①제28기 재무제표(안)에 관 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제28기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이사 아닌 경영진 임명요 청 동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비고

- 1) 보고안건명: `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보고, `13년 감사결과보고
- 2) 의결안건 내용
  - ① 제28기 결산실적 확정을 위한 재무제표(안)에 대한 승인
  - ② 제28기 주요 영업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승인
  - ③ 당사 이사 아닌 경영진(부사장 2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 3) 소재광이사 불참사유: 신한금융지주 감사위원회(17:00~19:00) 참석

#### (나) 201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2014.2.26일(10:30~12:20) / 안건 통지일: 2014.2.18

1/2011[1111   0/1/1	<u> </u>			12.2	, · <u> </u>	_			
항목			OLA	별 활동	내연			가결	
07		1 12 20 11 1							
1. 이사 성명	위성호	남인	조영래	반장식	김경림	소재광	김동환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1								
①제28기 이익잉여금처분	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산서(안) 승인	신 6	건'0	건'6	건'6	건'6	건'0	선'0	기리	
②제28기 정기주주총회소	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13년 경영진평가 따른	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기성과급 지급	신 선 경	건'6	신경	건'6	선정	선정	건경	기술	
④`14년 경영진 등 보상체	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 14년 이사 아닌 경영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수	(건경	신경	신경	신경	신경	신경	신경	기열	

| ⑥경영진 관련 諸규정 개정 | 찬성 | 가결 |
|----------------|----|----|----|----|----|----|----|----|
| ⑦경영진 평가체계      | 찬성 | 가결 |

#### ※ 비고

- 1) 보고안건명: `13년 경영실적 보고, `13년 하반기 계열사간 거래 결과 보고,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보고, `13.4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13년 내부통제 평가 결과 보고, 전산센터 이전 결과 보고
- 2) 의결안건 내용
  - ① 배당금을 포함한 제2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대한 승인
  - ②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및 소집에 대한 승인
  - ③ `13년 경영진 평가결과 확정 및 단기성과급 지급 승인
  - ④ `14년 경영진의 보상체계(기본급,장/단기 성과급 등) 개편 승인
  - ⑤ `14년 이사 아닌 경영진(부사장)의 보수 결정
  - ⑥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PU운영 규정의 일부 내용 개정
  - ⑦ `14년도 경영진 평가체계에 대한 승인

(다) 201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2014.3.31일(17:00~18:20) / 안건 통지일: 2014.3.21

항목			이人	별 활동	내역			가결
- '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소재광	김동환	박평조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여	기의견 요				
4. 의결안건								
①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								
②`14년 이사 보수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비고

- 1) 보고안건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보고
- 2) 의결안건 내용
  - ①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신규 이사진이 구성됨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②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

(라) 2014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2014.5.30일(08:15~19:15)/ 안건 통지일: 2014.5.21

항목			0 \	별 활동	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소재광	김동환	박평조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14년 하반기 계열사간 거 래 사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증 액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⑤내부통제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비고

- 1) 보고안건명: `14.1분기 경영실적 보고,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보고, 개인정보보호 현황진 단 및 보호/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보고, `14.1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 2) 의결안건 내용
  - ① 그룹사간 고객정보에 대해 영업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② `14년 하반기 기준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형별 거래한도를 설정
  - ③ 사채의 모집을 위한 채권발행(2조원) 일괄신고서 제출에 대한 승인 요청
  - ④ 전자단기사채의 발행한도를 기존 0.9조에서 2.5조로 증액
  - ⑤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 3) 박평조이사 불참사유 : 재일 사외이사로, 일본內 소속회사 회의 참석

(마) 2014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2014.7.8일(15:00~15:50) / 안건 통지일: 2014.7.1

÷LD	이기뷰 황드네어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소재광	김동환	박평조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여	기의견 요	서음			
4. 의결안건								
①신한카드 2014-1자산유동 화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신한카드 2014-1자산유동 화거래 권한 위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비고

1) 보고안건명 : 해당사항 없음

2) 의결안건 내용

① 당사 영업 및 차입금 상환용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유동화 계약 체결

② 자산유동화 계약 체결 관련 세부 실무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 요청

3) 박평조이사 불참사유: 재일 사외이사로, 일본內 소속회사 회의 참석

(바) 2014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2014.8.22일(10:30~12:00) / 안건 통지일: 2014.8.8

하모			OLL	ᄩᆄ	ılıd			가결	
항목			υĮ∧	l별 활동	네띡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소재광	김동환	박평조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14년 제1차 임시주주총 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이사 아닌 경영진 임명 요 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비고

1) 보고안건명: 장기렌터카 사업 추진 보고, `14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14년 상반기 계열 사간 거래 결과 보고,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보고, `14.2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 2) 의결안건 내용

- ① 장기렌터카 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 변경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 ② 이사 아닌 경영진(부사장 1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 (사) 2014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2014.10.1일(15:00~15:30) / 안건 통지일: 2014.9.24

항목			OLY	·별 활동(	내여			가결	
Ö T			۱۸۱	2 20	7117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성호 반장식 김경림 소재광 김동환 박평조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신한카드 2014-2자산유동 화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신한카드 2014-2자산유동 화거래 권한 위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비고

1) 보고안건명 : 해당사항 없음

2) 의결안건 내용

- ① 당사 영업 및 차입금 상환용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유동화 계약 체결
- ② 자산유동화 계약 체결 관련 세부 실무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 요청
- 3) 박평조이사 불참사유 : 재일 사외이사로, 일본內 소속회사 회의 참석

#### (아) 2014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2014.11.13일(08:00~09:10) / 안건 통지일: 2014.11.12

		<del>-</del>									
항목			OLI	ᄔᄖᆉᄃ	uа			가결			
87		이사별 활동내역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소재광	김동환	박평조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	기의견 없	음						
4. 의결안건											
①카자흐스탄 자회사 설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건명 : 해당사항 없음

2) 의결안건 내용

① 카자흐스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이사회 승인

3) 박평조이사 불참사유 : 재일 사외이사로, 일본內 소속회사 회의 참석

## (자) 2014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2014.11.21일(09:00~10:10) / 안건 통지일: 2014.11.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소재광	김동환	박평조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15년 상반기 계열사간 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래 사전 승인	0	0	0	1.0	0	0	. T	712

#### ※ 비고

- 1) 보고안건명: `14.3분기 경영실적 보고,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보고, `14.3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 2) 의결안건 내용
  - ① `15년 상반기 기준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형별 거래한도를 설정

#### (차) 2014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2014.12.11일(16:30~18:20) / 안건 통지일: 2014.11.28

	하모			OLL	ᄖᇬᆔ	ılıd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소재광	김동환	박평조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15년 경영계획(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15년 조직개편(안)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준법감시인 임면	찬성	가결						
-----------	----	----	----	----	----	----	----	----

#### ※ 비고

- 1) 보고안건명: `15년 리스크한도 설정 보고
- 2) 의결안건 내용
  - ① `15년 경영계획(안)을 승인
  - ② 영업추진력을 강화하고 미래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15년 조직개편(안)을 승인
  - ③ 기존 준법감시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선임

#### 라. 평가

신한카드 이사회는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 및 이사진에 대한 평가를 2015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5.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이사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부의 안건의 적합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의 실질성 등을 점검항목으로 포함한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가. 권한과 책임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신한금융그룹의 창업정신 및 이사회의 전문성/안정성/독립성 유 지에 적합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탐색/관리하고, 후보군 관리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외이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당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하여, `15.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 외부자문기관 등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관리하며, 연2회 이상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 구성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위원은 금융, 경영, 법률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명	이사 구분	직위	임기
위성호	상임이사	위원장	`13.8월 ~ `15.8월

반장식	사외이사	위원	`10.3월 ~ `15년 정기주총
김경림	사외이사	위원	`14.3월 ~ `15년 정기주총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요 주주와 외부자문기관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2014년 1차례 (2.2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1명의 사외이사가 퇴임(조영래 이사)함에 따라,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기업경영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선임(박평조 이사)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2014년도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4.2.26일(09시50분) / 안건통지일 2014.2.18일

	항목	0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해당사	항 없음		
4.	의결 안건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반장식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	찬성	가결
	(김경림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	가결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sup>※</sup> 사추위 위원 본인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불가

####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사외이사 후보 박평조는 2014년 2월 26일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4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고, 사외이사 후보 반장식은 2010년부터, 후보 김경림은 2011년부터, 후보 김동환은 2013년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와 신한 금융그룹 全계열회사로부터의 거래관계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2014년 2월 26일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 4명을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2014.2월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4.3월 개최된 201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되었습니다.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 (2-1) 반장식 사외이사 후보
- (가)후보자 성명: 반장식
- (나)후보자의 인적사항
- ① 출생연도: 1956년
- ② 출신학교
  - 덕수상업고등학교
  - 국제대학교 법학과
  -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공공정책 및 행정학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③ 경력

#### -일반경력

7	간	30 건건
From	То	주요 경력
2008. 9월	현재	서강대학교 교수 (現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007. 4월	2008. 2월	기획예산처 차관
2006. 8월	2007. 3월	기획예산처 재정운영실장(예산실장)
2003. 4월	2006. 7월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1999. 5월	2000. 3월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장, 예산총괄과장
1998. 3월	1999. 4월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장
1996. 4월	1998. 2월	재정경제원 지역경제과장, 기술정보과장
1983. 5월	1996. 3월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 종합기획과, 예산총괄과
1978. 5월	1983. 4월	총무처, 서울시청
1977. 11월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2. 12월	1977. 2월	한국외환은행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 ④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2010년3월23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4년 기준): 제28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경영진 평가/보상체계, 고객정보 제공 관련 지침 개정, `15년 경영계획,조직개편 승인 등

- 이사회 참석 횟수 : 10회 중 10회 모두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內위원회 참석수 : 감사위원회 5회 중 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회 중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1회 중 1회 모두 참석 (참석률 100%)

- 기타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장 (2014.3월~현재)

## (다)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반장식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위성호 사장입니다. 또한, 2010년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재우 사장이며, 당시 반장식 이사는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 등 정부기관에서의 재무 행정 경험을 갖고 국내의 저명한 경영학자로 손꼽히고 있었으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0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반장식 사외이사와 2007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재우 사장,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라) 후보자 추천이유

####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반장식 교수는 서강대학교 MOT경영대학원장으로 재직 이전 외환은행 및 경제기획원 금융담당 업무 등 다양한 금융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는 물론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경영학적 지식에 기반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再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반장식 사외이사는 기존의 이사회 및 이사회內위원회 활동 내역과 전문성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바) 자격충족 여부
-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반장식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② 전문성

반장식 사외이사 후보는 서강대학교 MOT경영대학원 재직 이전 외환은행 및 경제기획원 금융담당 업무 등 다양한 금융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사외이사 선임 이후 경영학적 지식에 기반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 직무공정성

반장식 사외이사 후보자는 2010년에 최초 선임 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0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윤리성, 책임성

반장식 후보자는 서강대학교 MOT경영대학원장으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 충실성

당사의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상장회사 限)의 사외이사로 겸직할 경우에는, 총 1개의 회사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장식 후보자는 OCI(동양제철화학)의 사외이사로 겸직하여 활동 중이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12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분야/경영학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15년 사외이사 활동 내역부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

입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재추천하는 경우에는, 당사 및 이사회에 대한 기여, 이사회 등 참여도 내역, 평가 등 연임을 뒷

받침할만한 자질과 능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외이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4년 2월 2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 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 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반장식 이사 본인의결 제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2) 김경림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성명 : 김경림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1942년

② 출신학교

34

- 경북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 ③ 경력

## - 일반경력

기	간	7 O 7 7
From	То	주요 경력
2014. 1월	현재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 고문
2008. 9월	2013. 12월	법무법인 지평 지성 고문
2004. 4월	2008. 9월	법무법인 지성 상임고문
2002. 4월	2003. 4월	한국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2000. 5월	2002. 3월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1999. 3월	2000. 5월	부산은행 은행장
1997. 3월	1998. 12월	은행감독원 부원장보
1995. 7월	1997. 3월	한국은행 이사
1994. 4월	1995. 7월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장
1991. 4월	1994. 4월	은행감독원 여신관리국장
1990. 3월	1991. 4월	은행감독원 금융개선국장
1988. 9월	1989. 3월	은행감독원 임원실장
1983.12월	1986. 7월	한국은행 자금부 차장
1979. 5월	1980. 4월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과장
1976. 8월	1979. 5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조사역
1966. 2월		한국은행 입행

##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기 간   주요 경력	기 간	주요 경력
-------------	-----	-------

From	То	
2007. 5월	2010. 5월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
2004. 5월	2010. 5월	삼성증권 사외이사

#### ④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2011년3월22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4년 기준): 제28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경영진 평가/보상체계, 고객정보 제공 관련 지침 개정, `15년 경영계획,조직개편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10회 중 10회 모두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內위원회 참석수 :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중 6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참석률 100%)

- 기타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2012.3월~현재)

#### (다)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경림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위성호 사장입니다. 또한, 2011년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재우 사장이며, 당시 김경림 이사는 외환은행 및 부산은행 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금융기관의 경험과 증권사 사외이사, 법무법인 고문 등의 활발한 대외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1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경림 사외이사와 2007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재우 사장,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라) 후보자 추천이유

##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경림 고문은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 고문으로서 재직 이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을 거쳐 부산은행, 외환은행 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금융업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는 물론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에서도 법률적 지식에 기반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再추천 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 추천 경로

김경림 사외이사는 기존의 이사회 및 이사회內위원회 활동 내역과 전문성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바) 자격충족 여부

-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김경림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② 전문성

김경림 사외이사 후보자는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 고문 재직 이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을 거쳐 부산은행과 외환은행 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 및 법률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J) 직무공정성

김경림 사외이사 후보자는 2011년에 최초 선임 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1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윤리성, 책임성

김경림 후보자는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 고문으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120시간이 소요되는데, 김경림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분야/경영학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15년 사외이사 활동 내역부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재추천하는 경우에는, 당사 및 이사회에 대한 기여, 이사회 등 참여도 내역, 평가 등 연임을 뒷받침할만한 자질과 능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외이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4년 2월 2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김경림 이사 본인의결 제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2-3)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성명 : 김동환

##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1960년

#### ② 출신학교

- 배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 ③ 경력

#### - 일반경력

7	간	30 HH
From	То	주요 경력
1997. 4월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 11월	현재	은행법학회 부회장
2011. 7월	2012. 6월	금융학회 부회장
2010. 5월	2011. 4월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실장
2009. 2월	2011. 2월	금융감독원 재제심의위원회 위원
2008. 10월	2009. 10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위원

2007. 3월	2009. 3월	감사원 금융/재정분과 자문위원
2005. 7월	2007.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분과위 자문위원
2002. 4월	2004. 3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1998. 4월	2006. 3월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 전문위원
1990. 4월	1997. 3월	일본 문부성 국비연구원
1986. 7월	1990. 3월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7	간	スO 경검
From	То	주요 경력
2007. 3월	2010. 3월	전북은행 사외이사

#### ④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2013년3월27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4년 기준): 제28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경영진 평가/보상체계, 고객정보 제공 관련 지침 개정, `15년 경영계획,조직개편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10회 중 10회 모두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內위원회 참석수 : 감사위원회 8회 중 8회 (참석률 100%)

#### (다)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동환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위성호 사장입니다. 또한, 2013년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재우 사장이며, 당시 김동환 이사는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은행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경제/금융 분야 활발한 대외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

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3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동환 사외이사와 2007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재우 사장,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라) 후보자 추천이유

####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동환 박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재직 이전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전북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도 경제학 지식에 기반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再추천 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 추천 경로

김동환 사외이사는 기존의 이사회 및 이사회內위원회 활동 내역과 전문성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바)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김동환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② 전문성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재직 이전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 재심의위원회 위원, 전북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나 직무공정성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자는 2013년에 최초 선임 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3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윤리성, 책임성

김동환 후보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120시간이 소요되는데, 김동환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분야/경영학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15년 사외이사 활동 내역부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재추천하는 경우에는, 당사 및 이사회에 대한 기여, 이사회 등 참여도 내역, 평가 등 연임을 뒷받침할만한 자질과 능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외이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4년 2월 2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2/3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2-4)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성명: 박평조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1943년

#### ② 출신학교

- 와세다대학교 이공학부 건축학과 졸업

#### ③ 경력

#### - 일반경력

기	간	20 거리
From	То	주요 경력
2009. 7월	현재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고문
2006. 3월	현재	일본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1997. 6월	현재	재일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직선 중앙위원
1988. 5월	현재	사회복지법인 미마츠선린회 이사장
2002. 4월	2004. 3월	삿포로 쓰쓰기노 비루진구협회 부회장
1999. 4월	2005. 4월	재일 대한민국민단 북해도지방본부 단장
1997. 8월	1999. 3월	신용조합 북해상은 이사장
1996. 4월	1999. 3월	재일 대한민국민단 북해도 지방본부 의장
1993. 4월	1996. 3월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정책기획담당)
1992. 3월	2005. 3월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1990. 12월	1994. 5월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1988. 5월	2006. 3월	주식회사 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1986. 4월	1992. 3월	북해도 한국 청년상공회 회장

##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기	간	즈O 경검				
From	То	주요 경력				
2003. 3월	2004. 3월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④ 사외이사 경력: 해당사항 없음

## (다)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박평조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위성호 사장입니다. 당시 박평조 이사는 일본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북해도한국학원 이사장, ㈜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4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박평조 사외이사와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라) 후보자 추천이유
-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평조 이사는 일본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무라오카 식품, 미마츠기업등의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박평조 사외이사는 성공적인 회사경영 전문성, 재일동포 사회 리더로서의 경력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바) 자격충족 여부
-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박평조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② 전문성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자는 일본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 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영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 직무공정성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 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윤리성, 책임성

박평조 후보자는 일본 미마츠기업 사장으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內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12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분야/경영학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15년 사외이사 활동 내역부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재추천하는 경우에는, 당사 및 이사회에 대한 기여, 이사회 등 참여도 내역, 평가 등 연임을 뒷받침할만한 자질과 능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외이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4년 2월 2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

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2014년3월31일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이며, 이중 반장식, 김경림, 김동환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1년의 임기로 연임하였고, 조영래 사외이사는 퇴임하여 박평조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비고
조영래	'09.3.16 ~	-	
반장식	'10.3.23 ~	연임	
김경림	'11.3.22 ~	연임	
김동환	'13.3.27 ~	연임	
박평조	'14.3.31 ~	신규 선임	

##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하여, `15.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자로 후보군을 구성하며, 신한금융그룹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일동포 주주대표 사외이사 후보군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군의 적극적 자격요건(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과 법률상 소극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상시 점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15.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 2회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사외이사 후보추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3) 후보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승계계획 등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경영승계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 2015년 2월 24일 지주회사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사항 등입니다.

## 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붙임〉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2004.5.10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10.2.26 시행)
- ②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제외한 위원은 자회사 경영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10.2.26 시행)
- ③ 회사의 이사아닌 경영진 중 당해 자회사 경영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제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11.2.8 개정)
- ④ 위원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

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 4. 자회사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 5. 자회사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6.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단, 신한캐피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날의 전일까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 2.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3.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해 정정할 수 있다.

#### 제6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의 경영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

#### 제7조(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검증)

- ①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½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계획 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 ④ 회사는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 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자회사 대표이사 대행자 및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 2.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 6.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 7. 그 밖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8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계인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적용범위)

제6조 및 제7조는 자회사 중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신한생명, 신한 BNP파리바자산 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신한캐피탈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1) 일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해 경영 연속성 확보 및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사를 포함한 자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2011년에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됩니다.

#### ① 대표이사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여전법 제5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 도덕성/신한가치 구현능력/업무전문성/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며, 후보군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③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⑤ 경영승계절차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는 당사의 대표이사 후보자를 위원회 결의로 추천하며,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됩니다.

#### ⑥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의 개발 프로그램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비상계획

당사의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승계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당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신한카드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당사 대표이사 후보 군을 선정하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 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및 최종 후보자 추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 니다.

##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회사 대표이사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총 15명의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지주회사 HR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군 수	추천 경로				
내부	15명	2014년 5월 22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는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HR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R팀은 팀장과 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핵심인재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R팀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HR팀은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실무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HR팀

- 직원수 : 총 6명

- 운영 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14.2.4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2.25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3.18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14.5.22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및 평가,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개발계획(안)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14.8.21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10.8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12.29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5.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 가. 권한과 책임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와 검증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대표이사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참고로 신한카드의 대표이사 자격요건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자회사경영관리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2014년도에 총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후보군 선정/평가, 개발계획 심의에 대한 검토 및 결의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 신한금융투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 해당 그룹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표이사 회장과 3명의 사외 이사를 위원으로 선임 하였으며, 2014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4년 중 기존 위원이었던 윤계섭 위원은 3월 26일에 임기가 종료되어, 동일자에 사외이사인 김기영 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임 하였습니다. 2014년 중 재임하였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한동우	상임이사	위원장, 대표이사 회장	2014.3.26	2015년 정기주총 까지	
김기영	사외이사	위원	2014.3.26	2015년 정기주총 까지	
김석원	사외이사	위원	2014.3.26	2015년 정기주총 까지	
이상경	사외이사	위원	2014.3.26	2015년 정기주총 까지	

## 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도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총7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0개의 결의 안건으로, 10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14년 5월에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15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고,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계획에대하여 심의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신한금융투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 해당 그룹사의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2014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2월 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윤계섭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①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2014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2월 2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윤계섭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①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2014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3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윤계섭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①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2014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5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기영	김석원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①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자회사 경영진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2014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8월 21일〉

	항목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기영	김석원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①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2014년도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10월 8일〉

항목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기영	김석원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①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2014년도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12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기영	김석원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①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라. 최고경영자후보 추천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 마.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 추천

해당사항 없음

## 6. 감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회의 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4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2명의 사외이사와 1명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을 가지며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이사회, 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 법규, 회사 내부규정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상감사 사항 등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규정상 상근감사위원은 위임사항 중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은 2014년 10회의 이사회 안건 전부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분기별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412)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상법§402)에 따라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인 감사팀은 2014년 중 자산실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공시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신한카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4).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4.2월에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임기는 제29기 (`14.1.1 ~ 12.31)부터 제31기 (`16.1.1~12.31)까지 3개 사업연도이며, 지주 연결기준 감사 업무의 효율을 고려하여 지주회사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계획/실시/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 및 위원회 결의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상근감사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재무제

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정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주총회 개최시 마다 주주총회 안건 및 서류를 검토하여 감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연도 마다 보고 받고, 이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 받고(14년도 제 2차 감사위원회), 연간 감사계획,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 상근감사위원의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 결과 및 계획을 보고 받아 준법감시인 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1) 총괄

신한카드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4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모두 3명의 이사(사외이사 2명, 상근감사위원 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 1.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2.법학 또는 상경 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3.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감사위원의의 임기는 법령 및 정관, 주총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하며, 위원의 해임의 경우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이 결의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 며,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사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에서 선임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영래	사외	위원장	`09.3.16	임기만료(`14년 정기주총)
반장식	사외	위원장	`10.3.23	`15 년 정기주총
김동환	사외	감사위원	`13.3.27	`15 년 정기주총
남 인	상임	상근감사위원	`09.3.16	임기만료(14년 정기주총)
김성화	상임	상근감사위원	`14.3.30	`16 년 정기주총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14년에는 총 8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감사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92%입니다. `13년도의 평균 참석률이 91%인 것에 비해 참석률이 높아져 실질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13년까지는 중요한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14년도는 분기별 감사진행 상황 및 차

분기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14.2월에 소집된 제 2차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 하였으며, 상근감사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 시켰습니다.

`14.3월 소집된 제 3차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부서의 평가 및 평가권한 위임을 통하여 감사보조조직인 감사팀의 독립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4.3월에 개최된 제3차 감사위원회 및 `14.8월에 개최된 제 6차 감사위원회에서는 주주 총회 의안 및 서류를 검토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기관경고 이상 감독원 수검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사회에 보고 의무가 있는 13년 감사결과 보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等 이사회에 보고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진행 후보고 하였습니다.

특히, `14.12월 제 8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을 통하여 경영진 결재 문서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일상감사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4년도 제 1차 감사위원회 : 2.10 (16:30~17:00) / 안건 통지일 : 1.29

	, , , , , , , , , , , , , , , , , , , ,				
항목	이사	이사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조영래 김동환 남 인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13년 결산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20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	J견 없음		
다.20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특이의	J견 없음		
라.2013년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2014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나) 2014년도 제 2차 감사위원회 : 2.26 (9:50~10:30) / 안건 통지일 : 2.18

	이사	사별 활동L	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영래	김동환	남 인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 의견					
가. 2013년 내부	통제시스템 운영평가 보고		특이의	J견 없음		
나. 2013년 공시	통제의 적정성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준법감시팀 내	내부통제 보고		특이의	J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28기 감사	보고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다. 상근감사위원	! 평가체계 개선의 건		찬성	찬성	가결	

## (다) 2014년도 제 3차 감사위원회 : 3.31 (16:30~17:00) / 안건 통지일 : 3.21

항목	이사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영래	김동환	남 인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3년 금감원 부문감사 결과 보고의 건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1.41.4-	찬성	가결	
대한 진술의건		찬성	(건경	/1일	
나.감사부서 평가 및 평가 권한 위임의 건		찬성	찬성	가결	

# (라) 2014년도 제 4차 감사위원회 : 3.31 (17:50~18:00) / 안건 통지일 : 3.2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반장식	김동환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6 11123 26-1 2				' ' =

## (마) 2014년도 제 5차 감사위원회: 5.30 (08:00~08:30) / 안건 통지일: 5.2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반장식	김동환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특이의견 없음				
나. '14년 1분기 결산실적	특이의견 없음				
다. '14년 감사 진행사항	특이의견 없음				

## (바) 2014년도 제 6차 감사위원회 : 8.22 (10:00~10:30) / 안건 통지일 : 8.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반장식	김동환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4년 상반기 결산실적	특이의견 없음			
나. '14년 감사 진행상황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14년 제 1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건경 	[ 건경	(건경	기열

# (사) 2014년도 제 7차 감사위원회: 11.21 (08:30~09:00) / 안건 통지일: 11.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반장식	김동환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14년 3분기 결산실적	특이의견 없음				
나. '14년 감사 진행상황(9~11월)	특이의견 없음				

# (아) 2014년도 제 8차 감사위원회: 12.11(16:00~16:30) / [안건 통지일: 11.28]

항목	이시	l별 활동니	<b>北역</b>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반장식	김동환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5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라. 감사보조조직 등

신한카드 감사위원회 감사보조조직의 명칭은 '감사팀'으로 감사팀장이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부장 1명, 부부장 5명, 차장 7명, 과장 2명, 대리 1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보고내용]

일자	대상	보고 내용
1.23	전사	개인 정보보호 현장 실태 점검 결과
2.3	회계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2.20	준법감시팀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보고
2.20	자금팀,회계팀 등	공시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5.15	전사	센터,협력업체 보안실태 점검 결과
연 2 회	지점 (8 점)	지점 종합감사 결과 보고
11.26	CRM 센터	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
연 4회	대손상각 심의	분기 대손상각 책임 심의 결과 보고
연 3회	내부감사협의제도	업무보고서,카드발급/해지,불건전영업
7.24	총무팀,IT 기획팀	구매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
10.31	고객보호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점검 결과
10.23	정보보호팀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
7.21	IT 본부	IT 본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1.26	영업기획팀	영업기획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1.26	스마트채널팀	스마트채널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1.26	경영혁신팀	경영혁신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1.26	기관영업팀	기관영업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 가. 권한과 책임

#### (1) 총괄

`14.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는 `15.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 본격적인 보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5.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상위원회규정을 새롭게 제정 하였습니다.

당사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어 운영되는지를 관리하며, 당사 이사회 및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조정한 당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및 보상안을 확정하며, 경영진 평가체계의 세부사항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가 위임한사항을 결의합니다.

또한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결정하며, 변동보상을 받는 특정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차보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보상위원회 위원은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가)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확정

당사 보상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가 심의 또는 조정한 경영진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을 확정하게 되며, 보상위원회 신설前 보상관련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제1차 정기이사회(2014.02.26)에서 2014년 경영진 등 평가/보상체계를 확정하였고, 2013년 경영진의 평가등급에 연동된 단기성과급 지급에 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보상체계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수익 창출력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총보상 규모의 축소, 손익 연동 보상 조정 강화, 기존 장기보상제도의 단순화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 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2014년 2월 26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보상 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신설되는 보상위원회에서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2015년 2월 25일 보상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보상위원회규정에 보상위원회 업무로 연차보상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회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라)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상위원회 규정 제 6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에 따라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2월 25일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회사 경영진 등을 변동보상대상자로 포함됨을 명시하였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정한 특정업무 종사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	인원수	직명
경영진 등	6명	사장, 부사장, 상근감사위원
특정업무 종사자	0명	해당사항 없음

(마)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회사 경영진 등에 적용

② 해외: 해당사항 없음

# 나. 구성

### (1) 총괄

당사 보상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와 보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거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 중 1인 이상을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1인이상 참여토록 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보상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당사 보상위원회 규정이 2015년 2월 제정되었으므로 2014년 활동내역 및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 (1) 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보상위원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보상위원회는 회사 경영진 등의 평가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수립,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상체계가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관련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부의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설명시에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건에 반영합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위원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3)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 경영진 등에 대한 보상체계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4년도 제1회 보상위원회(2014. 2.11)에서 당사를 포함한 자회사 경영 진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당사는 2014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보상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경영진 등의 보상 체계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첫째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업의 구조적 수익 창출력 약화에 대응하여, 경영진 차원에서 총 보상규모를 상당 폭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회사의 절대수익규모와 보상간의 연계를 강화하

기 위해 성과급 조정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상제도의 주가 연계를 강화하고 자 기존 성과연동형 현금보상제도(Performance Unit)를 폐지하고,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제도 (Performance Share)로 일원화하였으며, 제도의 운영방식을 단순화하였습니다.

#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당사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리스크관리팀이며, 준법감시 부서는 준법감시팀입니다. 2014년 12월말기준으로 리스크관리 인원은 21명, 준법감시 인원은 17명(준법감시인 포함, 변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팀의 경우 해당업무 평균 근속연수가 2년, 준법감시팀의 경우 3년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인원수	비고	
리스크관리팀	21명		
준법감시팀	17명	준법감시인 1명, 변호사 1명 포함	
		(별도 직원중 변호사자격보유자 1명 有)	

\* 인원수: 정규/계약직 기준

####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리스크관리팀 및 준법감시팀 직원들의 업무성과 목표 설정시 회사의 계량적인 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고유직무에 대한 달성도를 통해 독립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팀의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EVA, RAROC, 회사 위험포트폴리오 관리 역량 개선실적, 신용평가 모형 개발/개선 실적, 리스크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실적 등 리스크고유직무에 대한 달성도를 통해 독립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의 경우 준법감시업무, 법무 지원업무, 윤리경영 실천, 정도영업 내부통제 등을 통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의 경우에도 회사의 계량적인 실적과 연동되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연초에 설정한 전략과제 목표에 대한 평가를 감사위원

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4조에 따라 임직원의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8)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성과연계보상 강화 및 직원들의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제도는 회사의 성과지표 달성율에 따라 매년 차등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현금, 일부 주식(ESO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총 97.5억원을 출연하여 ESOP 219,645주를 취득하여 직원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직원별 연간성과(목표달성도)에 연계하여 보상 지급액이 변동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임금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기본급은 급여규정에 따라 직무/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등급별로 임금범위가 달리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경영진 등의 변동보상은 다양한 리스크 지표를 포함한 회사의 성과에 연동하여 보상규모가 설정

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장기보상은 4년간의 회사의 평균성과에 따라 최종 지급금액이 산정되므로 평가기간 중 한 해라도 특정 리스크 요인에 의해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장기보상 전체의지급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회사 평가에 반영되는 주요한 리스크 관련 지표

구분	내용
EVA	EVA = 경상이익 - 예상손실
(Economic	- {위험자본 x 자본비용률 + 무위험자본비용}
Value Added)	[위험사는 시시는이공할 기구위험사는이공]
RAROC	
(Risk Adjusted	RAROC = {경상이익 - 예상손실} ÷ 위험자본
Return on Capital)	
연체율	연체율 = 연체대출금 ÷ 총대출금
연체2개월전이율	연체2개월전이율 = 당월 2개월 연체채권잔액 (년간실적 합) ÷ 전전월 정상채권잔액 (년간실적 합)

#### (나) 동 측정결과와 보상의 연계 방법

상기 지표 등의 평가 결과는 연단위로 산출되며, 경영진 등의 전체 평가항목 중에서 일정비율 반영되어, 성과급 산정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 지표 이외에도 별 도의 비계량 지표가 전략과제 형태로 부여되는 경영진이 있으며, 해당 경영진의 업적평가등급 산정 시 반영되어 보상에도 연계됩니다.

#### (다) 동 측정지표와 회사 전체 리스크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아울러 상기 평가 지표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 지표들로서, 회사 전체의 다양한 리스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 (가) CEO 및 경영진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CEO 및 경영진은 담당 업무에 따라 그룹KPI, 회사KPI, 담당업무KPI, 담당업무 전략과제가 일정 비율로 업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그룹· 회사· 담당업무의 재무적인 지표와 비재무적인 평가요소가 모두 성과지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근감사위원은 업무의 특성상 회사의 계량적 지표와 연계된 평가를 배제하고 담당 업무 전략과제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나) 회사 및 개인성과 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재무성과, 담당그룹 KPI 와 비계량적인 전략과제 성과를 포함하여 업적평가 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변동됩니다. 아울러 장기 간의 전사 성과가 직접적으로 장기성과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다) 성과미달시 보상을 조정하는 방법

경영진 등의 경우 재무적인 성과가 목표 미달될 경우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이 0%~100%까지 조정됩니다. 또한 과거 대비 회사의 절대 수익 창출 규모가 줄어들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성과급 규모가 연동하여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 (가)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의 변동보상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성과급은 직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확정 후 지급하며,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정책

변동보상 중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

급시점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보상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히 보상 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이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미확정의 결정기준

장기성과급은 부여 당시 일정 수량의 주식수가 부여되며,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주식수가 변동되며, 최종 운영기간 종료시점의 주가에 따라 최종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 서 최종 운영기간이 종료되어야 이연 보상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가)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 등의 고정보상은 기본급과 활동수당으로 구성되며, 변동보상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보상의 각 규모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후 확정되며, 경영진 직위별로 기본급의 일정 배수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나) 변동보상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경영진 등의 변동보상 중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장기성과급은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변동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보상 중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장기성과급은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변동보상 중 주식연계상품의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성과급 중 이연 지급되는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 (1)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구분 (단위:명,억원)		수급자수 <sup>1)</sup>	고정보상액 <sup>2)</sup>	변동보상액 <sup>2)</sup>		
		구급시구	고성도성력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경영진	6	16	14	8	
(2013년)	특정직원	-	-	-	-	
당해년도	경영진	6	16	11	5	
(2014년)	특정직원	-	-	-	-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이상 경영진·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 (2) 변동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구분		변동보상액					
(단위:억원)			현금	주식 <sup>1)</sup>	주식연계상품 <sup>2)</sup>	기타 3)	
전년도	경영진	14	6	6	2	0	
(2013년)	특정직원	-	-	-	-	-	
당해년도	경영진	11	6	5	0	0	
(2014년)	특정직원	-	-	-	-	-	

주1) 주식: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인

주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고정보상'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변동보상'으로 분류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 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 주2) 주식연계상품: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 주3) 기타: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구분 (단위:억원)		이연보상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경영진	46	0	46	
(2013년)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경영진	35	0	35	
(2014년)	특정직원	-	-	-	

- 주1) 이연보상액: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한다.
-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 주3) 2014년 발생 변동보상액을 2015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상액을 2014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상액에 포함(이하 동일)

###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구분)

구분		이연보상액					
(단위:억원)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경영진	46	23	8	8	6	0
(2013년)	특정직원	-	-	-	-	-	-
당해년도	경영진	35	17	12	5	0	0
(2014년)	특정직원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4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2014년(t기) 발생분, 2013년(t-1기) 발생분, 2012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 (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구분			이연보상액 축소액	11)
(단위:억원)			주가변동 반영 <sup>2)</sup>	성과평가 등 반영 <sup>3)</sup>
전년도	경영진	0	0	0
(2013년)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경영진	0.2	0	0.2
(2014년)	특정직원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주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한다.

- 주2) 이연보상이 주가와 연동된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 주3)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

#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구분 (단	<u>난</u> 위:억원)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경영진	0	0	0
(2013년)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경영진	0	0	0
(2014년)	특정직원	-	-	-

- 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성의 보장상여는 보장성 상여금에서 제외(이하 동일)
- 주) 기존 고용자: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구분 (단위:명,억원)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경영진	0	0	0

(2013년)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경영진	0	0	0
(2014년)	특정직원	-	-	-

주) 신규 고용자: 당해 회계연도중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 (8)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구분 (단위:명,억원)		수급자수	퇴직보상액	1인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경영진	0	0	0
(2013년)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경영진	0	0	0
(2014년)	특정직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 (9) 임직원 총보수

구분 (단위:명,억원)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 차감전순이익(B)	비율 (A/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전년도 (2013년)	2,575	9,565	26.9%	3,435	0.75
당해년도 (2014년)	2,621	8,508	30.8%	3,329	0.79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는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 8. 리스크관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 설정/초과 승인, 리스크관리규정 제 • 개정 및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중심으로 직 • 간접 지도.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규정에 의거, 회사가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진출, 신상품 또는 신서비스의 개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 등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점검을 거친 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신용, 금리, 유동성, 운영 및 기타 리스크를 평가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리스크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위기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자본한도 입안 및 한도초과시 사후대책,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신설 및 변경, 리스크 관련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지주회사와 협의토록 하여 그룹차원의 통 합적인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재무/사업계획 수립시 위험수준을 감안한 최대 자산성장 가능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 인을 사전에 제시하고, 확정된 재무/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가용자본, 위험자본총량, 완충자 본을 포함한 위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신한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회사의 총리스크한도 범위 내에서 당사 리스크관 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가 한도 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리스크 한도 근접時 지주사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한도 유형, 한도조정 사유 등에 따라 지주사 또는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 (다)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은 크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정의 및 역할을 규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과 리스크관리 조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리스크관리규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리스크관리규정에 의거, 구체적 리스크관리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한 리스크관리업무 규칙/ 종합위기관리규칙/ 리스크 사전사후 점검운영규칙으로 세분화되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리스크관리 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제정 및 개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라) 기타

그 밖에 각종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및 현황과 대손충당금적립 기준 및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가 결의한 중요사항 및 실행결과 등을 보고 받아 주요 리스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2명(과반수)이 사외이 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2명은 금융회사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고려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중 기존 위원인 반장식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으로 2014년 3월 31일 위원직을 사임하였으며, 2014년 3월 31일 사외이사인 박평조 이사가 신규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4년 중 재임하였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경림	사인이사	위원장	`11.3.22	`15년 정기주총
소재광	기타비상무이사	위원	`12.3.28	`15년 정기주총
박평조	사외이사	위원	`14.3.31	`15년 정기주총
반장식	사외이사	위원	`12.3.28	`14년 정기주총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14년에는 총 6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94%로 참석율이 높아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14.3월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임하였고, '14.12월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15년 총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등 정기 보고사항에 대해 분기 단위로 보고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특히, '14.11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개인카드 자산건전성 추이 및 향후 전망 보고'를 통해 자산건전성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4년도 제1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2.26일(10:00~10:30) / 안건 통지일 : 2014.2.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반장식	소재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 ※ 비고

1) 보고안건명 : 2013년 12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 일부 개정 결과 보고,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나) 2014년도 제2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3.31일(17:50~18:00) / 안건 통지일 : 2014.3.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소재광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①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 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비고

1) 의결안건 내용 : 리스크관리위원회 신규 위원의 구성에 따라 위원장 선임

(다) 2014년도 제3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5.30일(08:00~08:10) / 안건 통지일 : 2014.5.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소재광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 ※ 비고

- 1) 보고안건명: 2014년 3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 일부 개정 결과 보고,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 2) 박평조이사 불참사유 : 재일 사외이사로, 일본內 소속회사 회의 참석

(라) 2014년도 제4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8.22일(10:00~10:30) / 안건 통지일 : 2014.8.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소재광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 ※ 비고

- 1) 보고안건명: 2014년 6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 (마) 2014년도 제5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2014.11.21일(08:30~09:00) /

안건 통지일: 2014.1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소재광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비고 참조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 ※ 비고

- 1) 보고안건명 : 2014년 9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개인카드 자산건전성 추이 및 향후 전망 보고,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 2) 보고 안건 중 '개인카드 자산건전성 추이 및 향후 전망 보고'에 대해 소재광 위원이 '전체 연체자산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나 최근 카드사들이 자산을 크게 늘리고 있고, 특히 금융자산을 늘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연체2개월전이율이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연체 채권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많이 변했고 지표 수준도 많이 낮아졌으므로 내년 사업계획 수립時 연체2개월 전이율 이외의 추가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함에 따라 전사 경영회의 자료 및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시 연체2-7개월 전이율 등 대손 관련 지표를 추가하도록 조치함.

(바) 2014년도 제6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12.11일(16:00~16:30) / 안건 통지일 : 2014.11.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소재광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01240121	•			

4. 의결안건

1)20	015년 리스크한도 설정에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관한	사항	신경	신'0	신'0	기글

# ※ 비고

- 1) 의결안건 내용 : ①2015년 전사 총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 설정
- 2) 김경림 위원장이 '리스크한도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기정(既定) 한도 근접 또는 일시 초과 시 지주사 앞 보고 및 승인 등의 절차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적인 보고 절차가 일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함에 따라 '15.2월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리스크관리규정 내 해당 조항 보완함.

#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1) 사외이사 반장식

####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반장식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반장식 이사는 서강대학교 MOT 경영대학원 원장으로서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정부기 관에서의 재무 행정 경험과 경영학계에서의 활발한 대외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0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0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0	경영학계에 대한 이해도 高,
기. 선판성		정부기관 경험 등 풍부
나. 직무공정성	0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다년간의 공직생활,
기, 판의결합정	0	명망 있는 교수

#### (2) 사외이사 김경림

#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경림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경림 이사는 외환은행 및 부산은행 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금융기관의 경험과 증권사 사외이사, 법무법인 고문 등의 활발한 대외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0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0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0	금융 및 법률 관련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0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0	국내 주요 금융기관 운영		
라. 충실성	0	이사회 전회 출석		

# (3) 사외이사 김동환

#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동환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동환 이사는 은행 사외이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의 자문위원 경험과 금융업 관련 오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0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0	결격사유 없음		
2.적극적 자격요건				
가.전문성	0	금융분야 전문가		
나.직무공정성	0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윤리책임성		다년간의 금융분야 연구실적 및		
· [ 기·판니구 a o		다양한 자문위원 활동		
라.충실성	0	이사회 전회 출석		

### (4) 사외이사 박평조

###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평조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박평조 이사는 재일동포 기업가로서 성공적인 기업경영, 삿포로 신용금고 대표,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의 경험과 일본 카드시장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0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0	결격사유 없음
2.적극적 자격요건		
가.전문성	0	기업경영 전문가
나.직무공정성	0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윤리책임성		성공적인 기업경영, 재일동포
이.퓬이역음경 		사회內 리더 역할 수행
라.충실성		해외(일본) 거주 불구, 이사회
リ.ठᡓᡠ 	O	적극 참여

#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 (1) 사외이사 반장식

#### (가) 활동내역

반장식 이사는 '14년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10회에 참석하였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리스 크관리위원회 각1회 모두와 감사위원회 5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14.2.10일 이사회에서 카드 해외 부정사용 사고발생 대비 강화를 지시하고, 출입국 정보 等을 활용한 해외이용 내역 관리를 제언하였습니다. 2.26일 이사회에서는 경영진 등 보상체계와 관련 해서 연간단위 단기적 평가에만 집중하게 되면 장기 성장을 위한 준비에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보상 시스템도 장기 성과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8.22일 이 사회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BC(Benefit-Cost) 분석' 혹은 'Value for Money 분

석'등을 활용하여, 효과가 미약한 비용은 과감하게 줄여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중장 기적인 성장을 고려한 효율적인 비용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반장식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4년 중 총 12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52,000,000	
기본금	42,000,000	월기본급 350만 * 12개월
상여금		
	5 500 000	회의수당 50만 * 11회
기타 수당	5,500,000	(익월 지급으로 12월분은 '15.1월지급)
	4,500,000	감사委 위원장 月수당 50만 * 9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2,962,990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2,962,990	부부동반 (인당 연 150만원 한도)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 (2) 사외이사 김경림

#### (가) 활동내역

김경림 이사는 '14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10회에 참석하였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모두와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14.2.10일 이사회에서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時 서명 대조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실 또는 위변조 카드의 부정 사용 사고 예방을 위해 샘플링 조사, 서명확인 절차 강화

를 통해 사고 대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2.26일 이사회에서는 경영목표 수 립과 경영진 보상체계와 관련하여 해당 건은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 되어야 하는 사안 인바, 이사회 안건 부의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3.31일 이사회에서는 전화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상품판매 스크립트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강하고 상담원이 그 내용을 벗어나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1.13일 이사회에서는 카자흐스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카자흐스탄의 경우 주력 사업이 석유/에너지/건설인 상황에서, 오일 및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카자흐스탄 신설 자회사의 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입 자본금에 대한 환 헷지 방안 등 종합적인 환 리스크 대책 수립이 긴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2.11일 이사회에서는 Code의 체계(카드 이용 행태, 고객群별 고객 관리, 마케팅 체계)에 대한 실적분석을 향후 이사회에 보고해 줄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이에 신한카드는 '15.2.4일 이사회 時 '14년의 Code9체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김경림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4년 중 총 12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52,000,000			
기본금	42,000,000	월기본급 350만 * 12개월		
상여금				
	F F00 000	회의수당 50만 * 11회		
기타 수당	5,500,000	(익월 지급으로 12월분은 '15.1월지급)		
	4,500,000	감사委 위원장 月수당 50만 * 9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3,000,000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3,000,000	부부동반 (인당 연 150만원 한도)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3) 사외이사 김동환

#### (가) 활동내역

김동환 이사는 '14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10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8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14.2.10일 이사회에서 카드업계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회성 이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바, 카드 고유 업무 영역에서의 수익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2.26일 이사회에서는 경영진 평가체계와 관련해서 그룹內 교차 고객과 관련한 KPI 항목이 신설된 바,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규제 강화 내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8.22일 이사회에서는 장기렌터카 사업 추진과관련해서 향후 차량의 '하자'로 인한 고객의 민원 발생 時 자동차 제조사와 당사와의 책임 소재판단이 쟁점이 될 수도 있는바, 명확한 배상 지침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2.11일 이사회에서는 '15년 경영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Plan-Do-See'의 포멧에 맞춰 세부 전략과제별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관리방안(See)까지 면밀히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김동환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4년 중 총 13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보수총액		47,500,000			
	기본금	42,000,000	월기본급 350만 * 12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5 500 000	회의수당 50만 * 11회		
	/  H   T   6 	5,500,000	(익월 지급으로 12월분은 '15.1월지급)		

L	h.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 (4) 사외이사 박평조

### (가) 활동내역

박평조 이사는 '14년 중 개최된 이사회 8회 중 4회에 참석(在日 회사 회의 참석으로 인한 부득이한 불참 件)하였고,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중 4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4.8.22일 이사회에서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자금수요 부분의 '영업수지차' 가 (-)로 표기 되면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 할 가능성이 있는 바, 용어를 더욱 명확화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이에 신한카드는 이후 자료에서는 '영업자금 입출금차'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1.21일 이사회에서는 '14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와 관련해서 일본의 엔저 현상 지속으로 일본內에서는 한국 경제와 한국 수출기업의 상황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內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기업의 분위기는 그러한 인식과는 차가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 기업 경영에 보다 면밀한 거시 경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12.11일 이사회에서는 '15년 경영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신한 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 확산을 위해서는 모든 직원과 고객이 공유 할 수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박평조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4년 중 총 8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	보수총액	36,000,000			
	기본금	31,500,000	월기본급 350만 * 9개월		
	상여금				
		4,500,000	회의수당 150만 * 3회		
	기타 수당	4,300,000	(익월 지급으로 12월분은 '15.1월지급)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 (5) 요약

구분				이사회內위원회							활동
	이사	나회	감 위원	-	리 <i>스</i> 관리우		보상위	리원회 -	사외 0 보추 위원	추천	필증 시간 (Hour)
사외 이사명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조영래	2	2	3	1	-	-	-	-	1	1	20
반장식	10	10	5	5	1	1	-	-	1	1	120
김경림	10	10	-	-	6	6	-	-	1	1	120
김동환	10	10	8	8	-	-	-	-	1	-	130
박평조	8	4	-	-	5	4	_	-	-	-	80
소재광	2	1	-	-	1	1	_		-	-	20

<sup>※</sup> 조영래 이사 : '14.3.31 퇴임,

<sup>※</sup> 소재광 이사: '14.3.31 '사외이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신분 전환,

※ 박평조 이사 : '14.3.31 취임

#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반장식	반장식 김경림		박평조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1	5년 사업계획 4	수립 이사회워크	샵
기. 쓰러한도 글시 첫 네즘	(신한지	니주 미래전략연 <sup>-</sup>	구소 및 유관부서	l 진행)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사유)	27	7 7	27	a a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사유)				
2. 누적교육 시간	4	4	4	4

#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사외 이사	기부 받은 비영리법인 등		기부한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금융회사 등	선임 전	선임 후
반장식	-	-	-	無	無
김경림	-	-	-	無	無
김동환	-	-	-	無	無
박평조	-	-	-	無	無

# 마.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가) 임원의 배상책임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주주나 제3자(종업원,소비자,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함으로서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

부당행위(Wrongful Act)란,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함 (담보범위는 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 함으로서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나)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라)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마)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바)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자)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보험기간: 2014.4.~2015.3

(4) 보상한도: 그룹 총 보상한도 500억원 (청구당/그룹사별)

(5) 담보지역 : 북미지역 포함 전세계

상기한 임원책임배상보험 만기가 도래하는 2015.4아래와 같은 특약을 삽입하여 임원책임배상 보험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특약 신설 : 피보험회사 중 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의 사외이사일 경우 자기부담액을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 바. 사외이사 평가

# (1) 평가 개요

신한카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내부평가(외부 설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 할 예정('15년 활동내역부터 평가 예정, '16년 1월 설문방식을 통한평가 진행 예정)입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1월에 사외이사 상호간 및 사내이사, 이사회 운영

부서장에 의한 평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② 평가 기준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전문성(선임시 고려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충실성(사외이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기여도(이사회등의 심의 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5등급의 절대평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③ 평가 절차

외부 설문기관을 통한 년1회 서면조사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위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기간 직전연도말에 이사회가 정하는 외부 전문 설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① 총론

'16년 1월부터 '15년 활동내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 해당 사항 없음
- (3) 외부평가
- (가) 외부평가 개요

외부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해당 사항 없음

# 아.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전략기획팀
  - 조직구성: 부서장(총괄) 1명, 부서원 12명
  - 지워내역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 지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시 사항 이행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 지원 및 제반 업무 등

##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 위	경력
신호주	2010.3.23	2012.3.28	24개월	리스크관리위 ('10.3월~'12.3월)	리스크관리 위원장 ('11.3월~ '12.3월)	한국산업은행 감사
반장식	2010.3.23	2015.3.26	59개월	사추위 ('10.3월~현재) 리스크관리위 ('12.3월~'14.3월) 감사위 ('14.3월~현재)	감사위원장 ('14.3월~현재)	서강대학교 교수 ('08년~ )
민정기	2010.8.27	2012.3.28	19개월	리스크관리위 ('10.8월~'12.3월) 사추위 ('10.8월~'12.3월)		신한금융 지주회사 부사장 ('12년~ )
김경림	2011.3.22	2015.3.26	47개월	리스크관리위 ('11.3월~현재) 사추위 ('14.3월~현재)	리스크관리 위원장 ('12.3월~현재)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고문 ('14년~ )
소재광	2012.3.28	2014.3.31	24개월	리스크관리위 ('12.3월~현재) 사추위 ('12.3월 ~'14.3월)		신한금융 지주회사 부사장 ('12년~ )
김동환	2013.3.27	2015.3.26	23개월	감사위 ('13.3월~ 현재)		한국금융 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박평조	2014.3.31	2015.3.26	11개월	리스크관리위 ('14.3월~현재)		일본 미마츠기업 사장

<sup>※</sup> 소재광 이사의 경우 '12.3.28~'14.3.31 사외이사, '14.3.31~현재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

# 10. 주주총회

# 가. 주주현황

- 신한카드는 신한금융주식회사 소유자본 100%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 발행 주식 총수는 125,369,403주(보통주)입니다.
- 2014년도 中 주주현황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개최	7 🛭	소집	소집	개최일자	개최	소요시간	이사회구성원
년도	구분	결의일	공고일	(요일)	장소	(분)	참석여부
2012	제26기	`12.2.24	`12.2.24	`12.3.28	신한카드	10	0
	정기주총			(수)	본사		
2013	제27기	`13.2.22	`13.2.22	`13.3.27	신한카드	10	0
	정기주총			(수)	본사		
2013	제28기	`13.8.23	-	`13.8.23	신한카드	15	0
	임시주총			(금)	본사		
2014	제28기	`14.2.26	`14.2.26	`14.3.31	신한카드	10	0
	정기주총			(월)	본사		
2014	제29기	`14.8.22	-	`14.8.22	신한카드	15	0
	임시주총			(금)	본사		

구분	안건명	비고
제26기 정기주총	제1호 의안: 제26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6/1 <del>7 6</del>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27기 정기주총	제1호 의안 :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28기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이사 위성호를
임시주총	제2호 의안 : 대표이사 사장 선임의 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제28기 정기주총	제1호 의안 : 제28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29기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자동차대여업무'를
임시주총	세I오 최신·경선 불구 계정의 신 	정관 사업목적에 반영

#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 사항 없음

## [붙임 1] 신한카드 정관

#### 제1장 총 칙

####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Shinhan Card Co., Ltd.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 3.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
- 4.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 5.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 6.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 7. 할부금융업무
- 8. 시설대여업무
- 9. 연불판매업무
- 10.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 11. 어음할인업무
- 12.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업무
-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 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 14. 지급보증업무
-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 16. 기타 신용의 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 17. 신기술사업금융업무
- 18. 벤처사업 관련 지분출자 및 투자업무
- 19. 인터넷 및 기타 e-Business 관련사업(Hub Portal Site 운영, 쇼핑몰 운영 등 포함) 및 투자업무
- 20.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및 투자업무
- 21. 통신판매업무
- 22. 보험대리점업무
- 23. 일반여행업
- 24. 환전업무
- 25. 카드의 제작대행업무
- 26. 부가통신업무
- 27. 광고업
- 28. 도, 소매업

- 29. 부동산임대업
- 30. 자동차 대여 업무
- 31. 전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대여 및 판매업무
- 32. 전 각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 33. 기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 등록하였거나 인 허가, 승인 등을 득한 업무
- 34.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제3조 (본점 및 지점)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 영업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십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오천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은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주주총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우선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⑥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 2 (상환주식)

- ① 회사는 발행시의 주주총회 결의로 우선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하 " 상환 주식"이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수는 6억주 이내로 하고, 그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를 상환하고, 이 때 계산상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중에서 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 본조의 상환주식은 상환기간 중 주주가 청구하는 때에 회사가 상환하거나 또는 회사가 상환기간 중 상환 결정을 한 때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상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⑤ 본 회사는 본조의 상환주식을 제 9조의 3에 의한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9조의 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6억주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는 전환되는 우선주식의 총수와 동수로 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다.
- ④ 전환주식이 발행된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은 일할배당에 의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제 1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 (신주의 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갖는다.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비율로 신주의 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2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2억주, 제3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5억주,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12억주, 제6호에 의한 신주 배정은 2억주를 각 각 초과하지 못한다.
-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2.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 4. 자금의 조달 또는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③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배정할 수 있으며,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명의개서등)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 익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본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채

####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화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 4.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 5.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 6.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주총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주 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의 이자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하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 4.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발행하는경우
- 5.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 6.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 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하고,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점 소재지 또는 그 인근지역에서 개최한다.

제18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권)

본 회사의 주주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주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등

#### 제25조 (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그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본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하되, 수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각자 본 회사를 대표한다.
- ④ 본 회사는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 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7조 (이사의 보선)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사의 결원이 생겨도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28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법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본 회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 아닌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31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거, 기구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32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1. 감사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보상위원회
- ② 각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에서 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며 제34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 (이사회의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및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은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 제37조 (감사위원회)

- ① 본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8조 (준법감시인)

본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6의 제④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한다.

## 제6장 계산

제39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재무제표의 작성 • 비치)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여 한다.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 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제42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 ③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 당해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3조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전항의 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적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2조 (사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 제3항은 이 정관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4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신한카드 지배구조 내부규범

####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상법상 회사"란「상법」제169조의 회사(「상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을 말한다.
  - 3. "사외이사"란「상법」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 4.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5.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 6.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7. "특정업무 종사자"란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의 설계·판매·딜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투자금융(IB), 트레이딩(주식·채권·파생상품거래 등) 담당 부서장 및 별도의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업무 경상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는 전문(계약) 직원 등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을 의미한다.
  - 8. "주식"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9. "변동보상"이란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외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 10.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54조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11. "준법감시인"이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 제1절 이사회

#### 제3조(이사회의 구성)

- ①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 및 신한금융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신한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 ②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제4조(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지배구조 정책 및 워칙 전반에 관한 사항
  -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 7.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8.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 제6조(이사회내위원회)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1. 감사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보상위원회

#### 제7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제8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제3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리스크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보상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보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위험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 2. 보상체계의 재무상황·위험과의 연계성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보상체계에 대한 연 단위의 독립적인 평가(이하 "연차보상평가"라 한다) 실시
  - 3.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와 경영진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 4. 그 밖에 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④ 보상위원회는 보상제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심의 및 연차보상평가 실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상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제1절 사외이사

#### 제12조(사외이사의 선임)

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14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21 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제15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 5. 관련법령 및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16조(사외이사의 임기)

- ①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21조에 의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 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 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종료일로부터 2회째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선임 되더라도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사외이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퇴임 후 2년 이내에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17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 ① 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를 말한다)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 전단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19조(사외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사외이사의 책임)

-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한다.
- ③ 사외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최대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한다.
-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자회사 등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 (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 한다.

-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제21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을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할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하되, 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 ⑤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제22조(사외이사의 보수)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한다.
- ② 사외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업무지원
  - 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제2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 ②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이에 응한다.

제25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26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 제2절 최고경영자

## 제27조(최고경영자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 경영자로 선임한다.

제28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 1.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 2.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29조(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한다.

#### 제4장 감사위원회

#### 제30조(기본워칙)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 제31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 제32조(감사보조조직)

-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33조(상근감사위원 등)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제34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한다.

#### 제35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에 관하 사항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관하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다.

#### 제5장 보상위원회 및 성과보상체계

## 제36조(기본원칙)

- ①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상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높은 보상을 위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과도한 변동보상 지급으로 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임직원의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제37조(보상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상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제38조(보상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상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①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을 변동보상으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의 변동보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설계한다.

제40조(이연지급)

- ①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은 수년간 이연 지급하며, 특히 최고 경영진과 고액연봉 특정업무 종사자의 경우 이연지급하는 변동보상의 비율을 상당수준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연지급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연지급 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 ① 회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의 변동보상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현금보상 지급 등)

- ① 이연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43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44조(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보험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제45조(성과평가 지표)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한다.
  -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경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
  -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 제6장 공시

## 제46조(정기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 회사 내부기관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 회사 내부기관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시 선임에 대한 이유
  - 3.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사외이사후보 추천 개요
    -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마.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 바. 관련법령 및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 아.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자.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
    - 차.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과 관련 하여 보고한 내용
    - 파.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제13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제20조제7항의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나. 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6.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 7.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보상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 나.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 다. 다음 세항의 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와 회사의 위험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자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
    - (1)회계연도 중 보상액(고정 및 변동 보상액 구분, 수급자 수)
    - (2) 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
    - (3) 이연된 보상액(지급확정 및 지급불확정 구분)
    - (4) 이연된 보상액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성과조정에 따른 지급액 및 축소액)
    - (5) 회계연도 중 신규 고용자에게 지급한 보장성 상여금액, 해당자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관련 보상금액, 해당자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액
- 8.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 9.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 수
- 나.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 10.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 11.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 한다. 제47조(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제11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한다.

### 제48조(주주총회)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제49조(공시방법)

이 규준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규범은 2015.2.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등)

- ①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범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6조제4항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17조에 따른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한다.
- ④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0조제7항제1호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 [붙임 3] 신한카드 이사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경영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영진'이라 함은, (i) 대표이사 사장 및 (ii) 이사가 아닌 자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 이사 사장이 선임한 자로서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사 아닌 경영진"이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4조 (이사회의 역할 및 권한)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이 규정 제13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④ 이 규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5조 (이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보호 및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구성)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7조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8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의 결원,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이사회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제13조 제1항 제5호 '사'목의 결의사항과 감사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위임 및 결의사항 등)

- ①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관계법 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가. 정관
    -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보상위원회규정
    - 다.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퇴직위로금 규정, PU(Performance Unit)운영규정
    - 라.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 마.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3.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 가.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과 관련된 사항
- 마. 자회사 등의 설립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바.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 사.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등에 관한 사항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나. 이사와 본 회사간의 거래승인 및 이사의 경업승인에 관한 사항
  - 다.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이사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라. 준법감시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마. 대표이사 사장의 이사 아닌 경영진 임면요청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바.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 사.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 5.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가. 1건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동 · 부동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 나. 1건당 100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단 기존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직전 계약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 다. 1건당 자기자본(직전 회계연도 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중 최근의 자기자본 기준, 이하 같음) 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을 신규 출자하는 경우
- 라. 기타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재산의 차입, 용역계약 이외의 계약, 소송에 관한 사항(단, CP, Call 차입 등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차입은 제외)
- 마.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 바. 사채 모집에 관한 사항
- 사.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 (1)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 주주
  - (2) 제1단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 제1단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4) 제1단부터 제3단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5) 제1단부터 제3단까지의 자가 제4단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6.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가.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변경
  -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대상 안건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기 타

- 가. 관계법령·감독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 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다.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사항
- 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 마.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 하는 사항
- 바.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1. 분기별 경영실적 현황
  - 2. 분기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지침 준수 현황
  - 3.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4.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5.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5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 ①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 1.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소집권자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3. 인사, 기타 비밀 유지가 중요한 사항의 경우
- ②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7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보상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제19조 (보수 등)

이사회의 이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 (사무국)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의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4] 신한카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 제2장 구 성

####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기준을 준용한다.

#### 제3장 회 의

####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부의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사외이사 선임 원칙의 수립·점검·보완
  -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13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등)

-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 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검증된 자중에서 인선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 ⑦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 5.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0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장 보 칙

#### 제14조 (간사)

- ①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규정의 개폐)
- ①이 규정의 개정, 변경 등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5] 신한카드 감사위원회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4.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사항,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제 4 조 (권한)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제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 2.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 4.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 제 5 조 (의무)

- ① 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 6 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제 2 장 구성

#### 제 7 조 (선임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2.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 제 8조 (해임 및 충워)

- ①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② 위원회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사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제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9 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기준을 준용한다.

#### 제 10 조 (위원회의 권한위임)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의 미착,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 는다.
- ③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④ 일상감사사항 등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위원에 위임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 ⑤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 제 3 장 회 의

#### 제 11 조 (회의의 종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 12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13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4 조 (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① 결의사항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마.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 다.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라.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승인
  - 마.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4. 기타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사항
  -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라.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 마. 내부통제기준의 제 개정 및 폐지
    - 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 사.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 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조사 및 검토
    - 차.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조사 및 검토
    - 카.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2.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5 조 (경영정보 요구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6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4 장 감사 및 보고

#### 제 17 조 (감사업무의 위임)

-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계획,실시,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 3.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8 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년도 마다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칙

제 20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 (감사부서)

- ① 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22 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및 제9조는 회사의 상장폐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6] 신한카드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및 역할)

위원회는 회사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다
-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재중이 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소집)

- ① 정기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업무)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 1.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변경
  -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변경
  - 3.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의 설정 및 허용한도 초과의 승인
  - 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현지법인 관련 자본금 출자 및 증자, 기업 인수합병, 기타 이사회 결의 대상인 지분참여
  - 6.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변경
  - 2.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3. 리스크관리협의회가 결의한 중요사항에 대한 실행결과
  - 4.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선이행 및 추인)

제5조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선이행(先履行)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업무사항 및 성과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